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3서식] <개정 2021. 7. 6.>

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
신청인	노동조합명	대표자
	소재지 (전화번호) (팩스번호)	
피신청인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 (전화번호) (팩스번호)	
교섭요구일		공고일

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사용자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여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1.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.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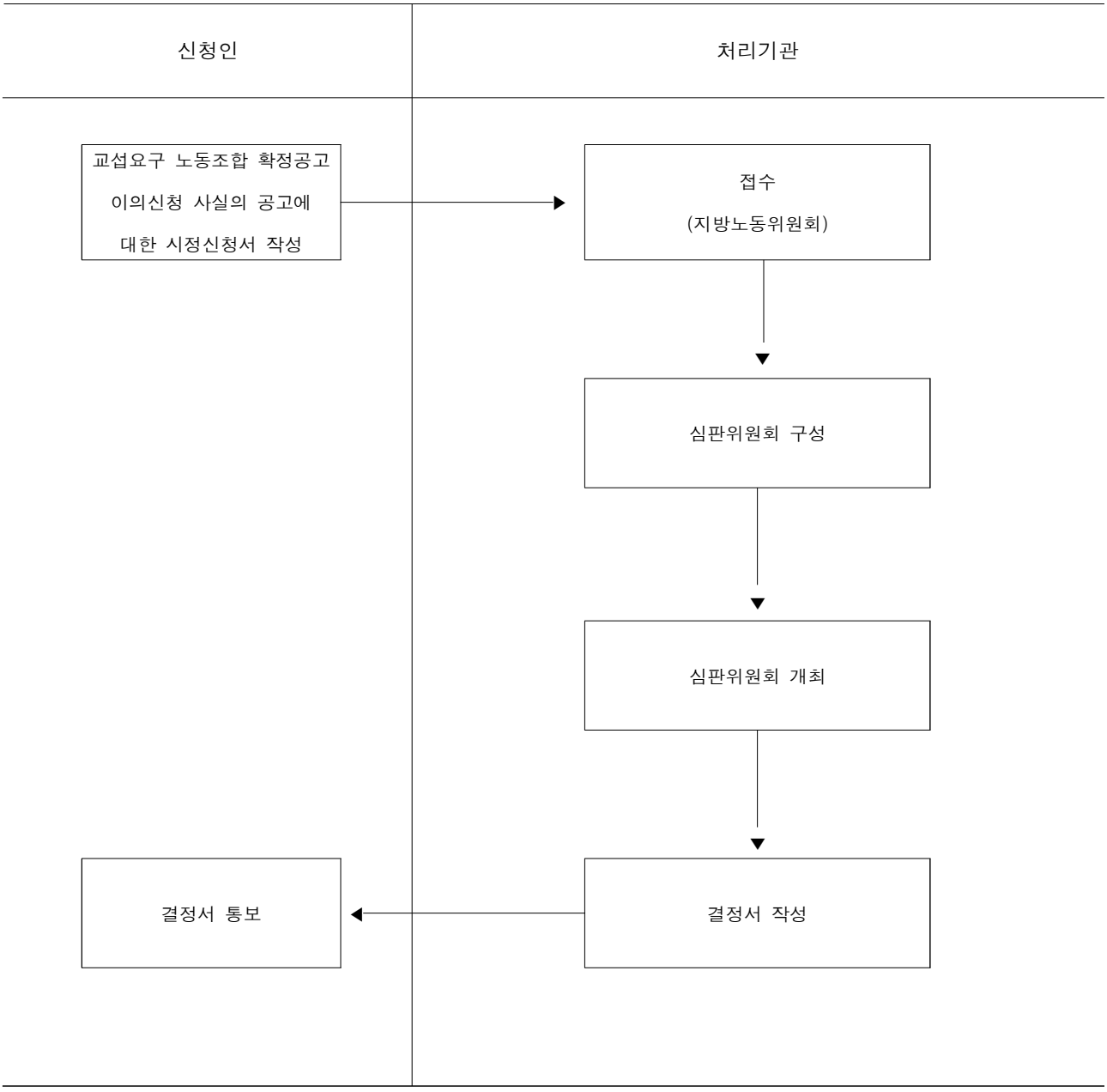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